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2024. 11. 21.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452호로 2024년 11월 8일 이성수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일반가정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적용범위와 감량화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5조)

다.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라.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및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4.11.13.~2024.11.18.) 결과: 의견 없음

※ 부서의견(청소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 및 지원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 안 제5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조치를 명시함.
- 안 제6조에서는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을 규정함.
- 안 제7조는 음식물류 폐기물류 배출방법 등에 대해 명시함.
- 안 제8조에서는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 안 제9조 ~ 안 제11조에서는 보조금의 신청·지급·반환에 대해 규정하고 지도점검 방법에 대해 명시함.

○ 검토 결과

-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이 총 43,008톤 발생했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만 24,444톤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음. 전체 발생량의 56.8%가 일반 가정에서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연간 1인당 배출량으로 환산¹⁾할 경우 약 57.7kg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은 사람의 식생활에 있어서 필연적일 수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환경부의 음식물류 쓰레기 관리 대책은 주로 발생 후 처리과정과 대량 발생하는 장소²⁾의 관리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발생 장소 기준 소량 배출되지만 전체 발생량의 절반을 훌쩍 넘는 가정(단독·공동주택)의 감량 대책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제정안의 제정 시기가 적절하다고 사료됨.

□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류 발생 현황(최근 2년)

구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음식점 (200㎡미만)	다량배출 사업장	계
2022년	14,139톤	10,659톤	9,153톤	11,055톤	45,005톤
2023년	14,637톤	9,807톤	8,244톤	10,320톤	43,008톤

1) 2023년 인구수 423,415명(외국인 포함) 기준, 영등포구민 (374,794명) + 외국인 (48,621명)

2) 다량배출사업장: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휴게음식점, 관광숙박시설 등

- 안 제5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감량화를 위해 감량기기 설치 권장과 필요한 지원 등의 조치를 규정함.
- 안 제6조는 감량률이 높고 내구성과 실용을 갖추어 사용이 간편한 품질인증제품 설치 등의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조건을 세분화하여 명시함.
- 안 제7조에서는 감량기기 설치 후 배출방법을 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안 제8조는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세대별, 비율별, 금액별로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여 보다 많은 구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임.

□ **영등포구 인구 현황(최근 3년)**

연도별	세대수(전년대비)	인구수(전년대비)	가구당 인구수
2021	186,774(2,060)	377,048(△2,432)	2.02
2022	189,396(2,622)	375,675(△1,373)	1.98
2023	190,737(1,341)	374,794(△881)	1.96

- 안 제9조 ~ 안 제10조에서는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신청자와 신청 방법을 규정하고 5년 이내 재신청할 수 없도록 예외 사항을 명시함. 아울러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등에 대하여 현장 및 서류 확인의 절차를 통한

적정 여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 안 제11조는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을 받은 세대의 지도점검 등을 통해 보조금 반환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2년 이상 사용을 의무화하고 부정 수급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서울시에서 감량기기 설치 지원을 명시하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자치구는 서초구, 용산구, 동작구 이렇게 3곳 밖에 없는 실정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있어 실질적인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은 개별 취사시설이 있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거주세대가 감량기기를 구입하여 설치할 경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량문화 조성을 통해 환경보전은 물론 지속 가능한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³⁾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3)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2022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현황 (단위: 톤)

구분	총 계	가 정				다량배출 사업장
		소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음식점 (200㎡미만)	
계	45,005	33,950	14,139	10,659	9,153	11,055
1월	3,863	2,783	1,294	933.9	554.7	1,080
2월	3,348	2,438	860	819	759	910
3월	3,610	2,703	1,030	893.6	779.8	907
4월	3,602	2,695	1,043	827.8	824.2	907
5월	3,849	2,943	1,477	831	634.9	906
6월	3,841	2,936	1,319	859	758.3	905
7월	4,047	3,144	1,250	1,025	868.5	903
8월	3,898	2,993	1,335	934.3	723.3	905
9월	3,691	2,787	1,140	882.9	764.1	904
10월	3,628	2,719	1,004	840.7	874.8	909
11월	3,913	3,003	1,228	951.2	824.3	910
12월	3,715	2,806	1,159	860	786.7	909

□ 2023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현황 (단위: 톤)

구분	총 계	가 정				다량배출 사업장
		소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음식점 (200㎡미만)	
계	43,008	32,688	14,637	9,807	8,244	10,320
1월	3,641	2,776	1,257	833	686	865
2월	3,365	2,510	886	681	943	855
3월	3,486	2,636	1,138	719	779	850
4월	3,304	2,447	1,232	697	518	857
5월	3,743	2,880	1,392	820	668	863
6월	3,731	2,861	1,238	848	775	870
7월	3,998	3,128	1,470	935	723	870
8월	3,616	2,742	1,251	811	680	874
9월	3,490	2,636	1,252	848	536	854
10월	3,488	2,632	1,135	852	645	856
11월	3,622	2,766	1,190	906	670	856
12월	3,524	2,674	1,196	857	621	850

참고 자료

1

폐기물관리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 ③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